

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의견 청취 방법 개정(안 제7조)
- 나.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마련(안 제14조의3)
- 다. 성장관리계획 내용 및 용어 개정(안 제17조의2, 안 제52조의3, 안 제54조 등)
- 라.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개정(안 제27조)
- 마. 건폐율 완화 조항 개정(안 제52조)
- 바.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(안 제52조의3)
- 사. 개별법령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(안 제53조)
- 아. 감염병관리시설 용적률 완화(안 제5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규제심사 : 해당없음 [미래지역활력과-5248(2022.10.17.)]
-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 [가족지원과-44111(2022.10.17.)]
-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10. 20. ~ 11. 9.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
- 주요 개정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마련, 건폐율 완화 조항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-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